

(주)퍼스트코리아 회원 관리 규정

본 회원 관리 규정은 판매원과 주식회사 퍼스트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전체계약의 일부입니다. 전체계약은 회사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회원 관리 규정, 후원수당 지급 기준, 이용약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판매원"이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회사가 정한 규정 등에 따라 회사의 독립 판매원으로서 등록한 자로서, 회사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타판매원, 소비자에 대한 후원활동 및 각종 보상 플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 받은 독립계약자를 말합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회원 관리 규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이용약관 및 본 회원 관리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1 장 : 총 칙 】

제 1조 (주)퍼스트코리아 회원 계약에 포함된 정책

(주)퍼스트코리아(이하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개정하게 될 본 회원 관리 규정은 (주)퍼스트코리아 회원(이하 "회원")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그 계약서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본 회원 관리 규정 전체에 걸쳐 "계약"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이는 회사의 회원 가입신청서, 본 회원 관리 규정, 그리고 회사의 마케팅 및 보상플랜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제 2조 계약 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 내용과 가격을 전적인 고유권한으로 개정할 권리를 가지며, 방문판매법 및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규 및 절차에 의거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에 대한 공고는 다음 방법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통해 고지된다.

1. 회사의 공식 회원 웹사이트에 공지
2. 전자메일(이메일)
3. 회원개별 공지(문자서비스 외)

4. 별도의 우편물

제 3조 정책 및 조항의 분리

만일 현행 또는 개정된 계약내용의 어떤 조항이 여하의 이유로 효력이 없거나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 조항의 효력이 없는 해당 부분만 분리될 것이며 그 나머지 조건 및 조항은 전적으로 유효한 상태로 남는다.

제 4조 관계법령의 숙지 및 준수 의무

회사는 사업행위를 관리하는 관련 법규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준수를 독려하는데 있어 회사에 주어진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회원은 계약에 근거한 권리나 권한의 행사 및 사업행위와 관련된 민, 형사상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법령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회원 개인이 이를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체의 사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도 없다.

【 제 2 장 : 회원의 등록 】

제 5조 회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 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등록이 제한된다.

1.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2. 법인 또는 회사
3.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1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등록 당시 만 19세 미만인 자
6.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7. 등록 당시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
8. 외국인(단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는 제외)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단,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해 회원 등록이 제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제 6-1조 부부사업자

1. 부부사업자의 가입 및 지위

1) 법적 부부는 하나의 FA 자격만을 가질 수 있다. 한 배우자가 이미 FA로 가입된 경우 FA 가입을 희망하는 미가입 배우자는 부사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을 희망하는 부사업자가 가입 자격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2) 가입된 FA가 법적 부부가 될 경우 한 명의 FA는 기존의 지위를 포기하고 부부사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지위로 활동할 경우 기존의 FA 지위가 인정되며 부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받을 수 없다.

3) 부부사업자 중 주사업자는 회사로부터 각종 정보 및 통지, 후원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부사업자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6개월 이후에 할 수 있다.

2. 부부사업자의 책임

1) 부부사업자는 주/부사업자 모두 후원 의무를 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회사는 주/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2) 회원 활동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는 부부사업자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 다만, 주/부사업자 한쪽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개별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

3) 미가입 배우자가 퍼스트코리아 사업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가입한 FA의 요청이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미가입 배우자(부사업자 탈퇴 포함)가 회원 활동 법규 및 회사의 각종 정책을 위반한 경우, 가입한 FA에게 책임이 있다.

3. 퍼스트코리아 사업의 분리

1) 부부사업자가 이혼하는 경우 누가 FA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FA 지위를 갖는다.

- 2) 이혼하는 부부사업자의 하위조직은 양분되지 않으며 회사의 수당이나 각종혜택을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없다.
- 3) 이혼 등으로 FA 지위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는 분쟁 종결시까지 FA의 지위 및 수당이나 보너스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4) 이혼 후 배우자 한쪽이 퍼스트코리아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FA는 즉시 원하는 라인의 신규 FA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5) 회사는 FA 사업의 분리 시 해당 FA의 수당과는 별도로 직급(지위)과 관련 해서는 심의를 거쳐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7조 회원 혜택

회원등록 처리의 권한은 회사에 있으며 회원등록신청서 및 동의서를 회사가 승인한 후, 회사의 마케팅플랜 및 보상플랜 그리고 회원 계약서 상의 모든 혜택이 신규 회원에게 적용된다. 그 혜택은 다음의 권리들을 포함한다.

1.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마케팅
2. 회사의 마케팅 플랜 및 보상플랜에 참여(자격을 갖춘 경우, 보너스와 수당의 수령)
3. 다른 사람을 회사 사업을 하는 회원으로 후원함으로써, 마케팅 조직을 구축하고 회사의 마케팅 플랜 및 보상플랜을 통해 발전
4. 회사의 정기 간행물 구입 및 그 외 공지사향 수령
5. 회사가 후원하는 지원, 서비스, 교육, 동기부여 및 인증 행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참가비를 납입한 후 참여
6. 회사가 회원을 위해 후원하는 홍보 및 인센티브 컨테스트 및 프로그램에 참여

제 8조 회사 사업의 기간 및 갱신

회원계약서의 기간은 회사가 그 계약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1년이다.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회원에 한해 1년마다 자동으로 회원자격은 갱신된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하거나 또는 최종주문일로부터 6개월 동안 주문이력이 없을 경우 계약의 효력은 종료되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 9조 회원 정보의 기재 및 변경

모든 회원은 등록 당시 본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인명의 등록, 타인 인적사항(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사용하여 회원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회원은 회원등록 시 기재한 내용(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이 직접 마이오피스에 접속하여 이를 수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 10조 등록의 강요금지

모든 회원은 특정인에게 당사의 회원으로 등록할 것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본 법규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제 11조 회원의 자율성

모든 회원은 활동의 자율성을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나 상위회원들로부터 다음 각 항의 부담을 질 것을 강요 받지 않는다.

1. 일정량의 재고 보유
2. 당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 또는 사업보조용품, 지원 프로그램의 구입 등
3. 일정 수의 다른 회원 모집 또는 후원
4. 기타 회원에게 경제적, 심적 부담이 되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부담

【 제 3 장 : 회사의 사업 운영 】

제 12조 회사의 마케팅 플랜 및 보상플랜에 대한 준수

회원은 회사의 공식 간행물에 제시된 회사의 마케팅 플랜 및 보상플랜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회원은 회사의 사업내용을 설명할 때, 회사의 공식 간행물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과 다른 마케팅 시스템, 프로그램 혹은 방법을 혼합하여 제시해서는 안 된다. 회원은 회사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고객 및 소비자로서 하여금 회사의 공식적인 계약서 이외의 여하한 다른 동의 및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마케팅 플랜 및 보상플랜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사의 공식 간행물에서 권장 또는 요구된 구매 혹은 납부 이외 여타의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여타의 개인 혹은 단체에게 비용을 납부하도록 고객, 회원이 되고자 하는 고객 및 소비자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해서는 안 된다.

제 13조 광고

1. 개인정보의 제작 및 사용

모든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혹은 제품에 대한 좋은 평판을 보호하고 홍보해야 한다. 회사와 회사의 기회, 마케팅 플랜 및 보상플랜 그리고 회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홍보함에 있어 무례하고, 기만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비윤리적이고 혹은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관행을 해서는 안된다.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사업기회를 홍보하기 위해 회원은 반드시 회

사가 제작한 영업관련 도구 및 지원자료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품, 제품 라벨, 마케팅 플랜과 보상플랜 그리고 홍보자료 등을 신중하게 디자인하여 그 자료들이 사실성 있는 공정하고 진실된 방법으로 홍보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은 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회사와 관련된 간행물, 광고, 영업관련 도구, 홍보 자료, 혹은 인터넷 웹 페이지를 제작 및 사용, 배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2. 회원 웹사이트

만일 회원이 제품과 사업기회를 광고 또는 공유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 웹사이트는 회사의 '인터넷 비즈니스 규정'(제13장 참조)에 따라 구축이 되어야 한다. 즉,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식홈페이지(웹사이트)이외에 회원은 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특정 도메인을 획득하여 호스팅을 통한 인터넷 홈페이지(웹사이트 등)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상표권 및 저작권

회원을 포함하여 여하한 사람이라도,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의 상품명, 상표, 디자인 혹은 상징을 사용할 수 없다. 회원은 회사의 서면 승인 없이 회사의 이벤트 및 연설에 대한 기록물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할 수 없으며, 회사가 제작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 테이프 형태의 프레젠테이션 기록물을 판매 또는 회원 개인 사용의 용도로 복제해서도 안 된다. 회원은 회사의 상품명, 상표, 서비스명, 서비스 마크, 제품명, 회사명 또는 파생어를 인터넷 도메인 명으로 사용하거나 등록할 수 없다. 회원이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구두 외의 문서 및 다른 수단으로 제품, 회사, 자회사, 또는 제품의 제조사 등 회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홍보 자료, 정보성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 및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회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술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자료 제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원 계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서면 통보로 해당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상표, 상품명 및 저작권 규정(제 14 장)을 참조 요망.

4. 대중매체 광고 및 홍보

회원은 회사의 제품, 서비스, 혹은 자신의 독립적 회사 사업 관련하여 외부 미디어의 문의가 있는 경우 이에 응대하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 여하한 종류의 미디어 매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의 사항은 회사로 즉각 전달되어야 한다.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회원이 임의로 회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외부 미디어에 출연하거나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나 특정 회원 또는 소속된 그룹을 홍보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5. 동의 없는 전자메일 및 팩스

회원은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없다.

6. 회원 인명, 상호명칭

회원은 전화번호부의 인명 혹은 상호 편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회사 독립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등재할 수 있다.

회원의 성명 독립사업자 예) 000 퍼스트코리아 독립 사업자 또는 FA 또는 First Agent

회원은 전화응대 시 “퍼스트코리아입니다”, “주식회사 퍼스트코리아입니다”, 또는 전화를 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회사 본사 사무실에 전화한 것으로 믿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 외의 다른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회원은 인명, 상호명칭이 당사의 직원 또는 대리인임을 암시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와 독립적인 회원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제 14조 추천인/후원인의 변경 및 재등록

1. 추천인/후원인 변경

모든 회원은 다른 사람을 추천/후원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추천/후원인을 선택할 궁극적인 권리가 있다.

동일한 신규 회원에 대해 두 명의 회원이 서로 추천인/후원인이라고 주장할 때, 회사는 본사의 사무실에 먼저 접수된 신청서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천인/후원인 지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추천인/후원인 회원은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회사는 등록과정에서의 업무 실수로 전상 상 추천인/후원인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고유권한으로 검토 후 변경할 수 있다.

추천인/후원인 변경은 회사의 전적인 고유권한으로, 결정된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회원은 어떠한 주장도 제기할 수 없다.

추천인/후원인 변경은 입력의 실수나 업무상 과실의 사유로 등록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재등록

회원은 자신의 회사 사업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또는 마지막 주문일로부터 6개월 동안 비 활동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예, 회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중단 등) 회원 자격을 해지한 후 재가입시 정당하게 소속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6개월의 비 활동 기간이 지난 후, 예전의 회원은 새로운 후원인 아래 다시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예전 회원의 하위사업자들은 원래의 후원인 라인에 남게 된다. 회원이 자신의 회사 사업을 자발적으로 취소하였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6개월 이내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다. 6개월 이후 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이 원하는 다른 후원인(추천인)으로의 등록이 가능하다.

회사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관리차원에서 실시하는 재등록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더 이상 사업활동 전개의사가 없는 자로 간주하여 직권해지 한다. 회사

는 신규 및 재가입 회원의 여하한 신청 혹은 갱신에 대해 사업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5조 소득에 대한 주장(사행심 조장 금지)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회사의 기회 또는 마케팅 플랜 및 보상플랜에 대한 제시 혹은 의논을 할 때, 소득에 대한 예상이나 주장을 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6조 상업적 매장

회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는 사업의 성격이 사전에 고객과 예약을 하여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회사가 인정한(사전 승인을 받은)곳에서만 전시되고 판매될 수 있다. 그러한 시설에서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회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 외부에서 만났을 때처럼 반드시 사전에 해당 회원이 그 잠재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조의 상업적 매장은 운영하는 회원은 동일 장소에서 경쟁사(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회사 포함)에 대한 사업 소개 및 사업설명과 제품판매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7조 이해의 상충

1. 유인행위 금지

회원은 본 계약기간 중 다른 직접판매,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체 혹은 방문/후원방문판매와 같은 유사한 마케팅 기회 (총칭하여"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사의 다른 회원이나 고객을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리쿠르팅 할 수 없다.

2. 경쟁사 제품 혹은 서비스의 판매

회원은 회사의 고객 또는 회원에게 회사 이외의 여하한 경쟁 프로그램,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시도해서는 안된다.

3. 경쟁사 제품 혹은 서비스의 전시

회원은 회사의 홍보자료, 영업자료, 제품 혹은 서비스를 여타의 타사 홍보자료, 영업자료, 제품 혹은 서비스와 함께 동일한 장소에 전시해서는 안된다. 회원은 회사의 기회, 제품 혹은 서비스를 타사의 프로그램, 기회, 제품 혹은 서비스와 함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고객, 기존고객 또는 회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4. 하위사업자 활동보고서(계보도)

회원은 회사 웹사이트의 회원공간(마이오피스)을 통해 하위사업자 활동보고서에 접속 및 열람할 수 있다. 이 회원공간에 접속하는 회원의 비밀번호는 보안이 유지된다. 그 공간에 포함된 모든 하위사업자 활동보고서 및 정보들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정보 자산이며

사업상 비밀이다. 하위사업자 활동 보고서는 회원이 자신의 회사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해당 하위사업자 조직과 함께 노력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목적만으로 회원에게 극비리에 제공되는 것이다. 회원은 하위사업자 활동보고서를 자신의 하위사업자를 지원하고, 동기부여 시키며 교육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비밀협정 및 기밀유지협정 없이는 회사가 회원에게 하위사업자 활동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에 회원과 회사는 동의하며, 회원이 하위사업자 활동보고서를 상기 목적 외의 이유로 이용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하위사업자 활동보고서 접근을 즉시 차단할 수 있다. 회원은 자신의 명의 혹은 어떤 타인, 동업자, 협회, 회사 혹은 그 외 주체를 대신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하위사업자 활동보고서의 여하한 부분에 포함된 어느 정보 든 여타 제3자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것.
- 자신의 웹사이트 회원공간에 대한 비밀번호 혹은 열람 코드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것.
- 해당 정보를 자신의 회사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 이외의 여타 목적 혹은 회사와의 경쟁을 위해 사용하는 것
- 여하의 보고서에 기재된 회사의 회원이나 고객을 리쿠르팅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혹은 회사와 그들의 사업적 관계

에 변동을 주기 위해 회사의 회원이나 고객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유혹하려는 여하한 시도 행위 하위사업자 활동보고서에 포함된 여하의 정보를 여하의 사람, 동업자, 협회, 회사 혹은 다른 주체에 공개하거나 사용케 하는 행위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재 또는 예전의 모든 회원은 하위사업자 활동 보고서의 원본 및 모든 사본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하위사업자 정보 취급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막론하고, 유출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해당 정보를 사용한 회원이 지게 된다.

제 18조 착오 혹은 질문

회원이 수당, 보너스, 하위사업자 활동보고서 혹은 수수료 비용 등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착오가 있었다고 여기는 경우, 해당 회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착오 혹은 문제의 사례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여하의 착오, 누락 혹은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다.

제 19조 정부의 승인 혹은 보증

어떤 중앙 또는 지방 규제 기관 혹은 공무원도 특정 직접판매나 네트워크 마케팅회사 또는 프로그램을 승인하거나 보증할 수 없다. 따라서, 회원은 회사 혹은 그 마케팅플랜 및 보상플랜이 여하의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 "보증" 혹은 "허가" 되었다고 표현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20조 신청서 혹은 주문서류의 보류

회원은 새로운 신청자의 등록 및 제품 구매를 조작해서는 안된다. 모든 회원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 그리고 제품주문서는 신규 회원의 서명 혹은 고객의 주문이 있었던 시점에서 회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21조 독립계약자 신분

회원은 독립계약자 신분이며 프랜차이즈나 사업기회에 대한 권리의 구매자가 아니다. 회사와 회원 사이의 계약은 회사와 그 회원 사이에 노사의 관계, 대리점, 동업 혹은 합작투자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회원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중앙 또는 지방세무상의 목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될 수 없다. 모든 회원은 회사의 회원신분으로 취득한 모든 수당에서 발생하는 중앙 또는 지방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회원은 회사에 여하의 의무를 부과할 (표현하거나 암시할) 권한이 없다. 회원이 회원 계약서, 본 회원 관리 규정 및 관계 법령에 준수한다면, 회원은 자신의 영업에 대한 목표, 시간 및 방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제 22조 국제 마케팅

어떤 회원도 회사의 제품, 회사에 관련된 간행물, 판매 자료 혹은 홍보자료를 한국에서 그 외의 국가로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작, 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 이 강령에 대한 여하한 위반도 본 계약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해당 회원에 대한 즉각적인 계약해지의 근거가 된다.

제 23조 제품의 과다구매 및 후원수당 수령을 위한 구매

회원은 본인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되며 다른 회원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끼치려 시도해서는 안된다. 후원수당의 수령을 위해 구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후원수당을 위한 구매는 최종소비자의 실제 제품구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승급, 인센티브, 포상, 수당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하한 방법 혹은 계책을 포함한다. 여하의 프로모션이 오용되었거나 혹은 사기성 있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회사가 고유권한으로 판단하게 되면, 회사는 후원수당의 박탈, 반환, 징계, 계약해지, 또는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하여,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하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제 24조 법규 및 조례의 준수

회원은 자신의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모든 정부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시청 혹은 구청의 공무원으로부터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조사, 처분 등의 내용을 통지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관련절차에 공손하고 협조적으로 응하여야 할 것이며 즉시 해당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고 수령한 문서 등의 사본을 회사의 규정준수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내야 한다.

제 25조 회원 당 하나의 회사 사업

한 명의 회원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누구도 두개 이상의 회사 사업을 소유, 운영 하거나 두개 이상의 회사 사업에서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회원 당 하나의 사업 규정에 대한 예외로는 상속을 통하여 다른 사업에서 이자를 받는 회원의 경우에 사례별로 검토된다. 이 규정에 대한 예외 요청은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 26조 관련인의 행위

만일 회원이 상속 및 회원의 변경 등에 대한 회원의 지위와 관련된 계약 조항의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 및 해당 회원의 직계가족 중의 인원이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관여된 경우, 해당 회원에 의한 절차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정책 내용에 따른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회원 지위에 대한 최종 법적 또는 내부 준법부서 담당자의 결정으로 회원의 지위를 정할 수 있다.

제 27조 회사 사업의 변경 혹은 증여

회사는 한 명의 회원에 하나의 번호를 인정한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타인에게 지급하지 않음을 뜻한다. 회사는 회원의 정보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부임을 인정하는 국가가 발급하는 공식적인 서류를 근거로 하여 사업의 전달 및 회원의 변경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의 배우자가 이미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회원번호만을 가질 수 있다.

제 28조 온라인을 통한 후원

온라인 등록절차에 따라 신규 회원을 후원하는 경우, 그 신규 등록자가 등록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후원인이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등록자가 반드시 개인적으로 온라인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 회사의 정책 및 절차, 그리고 회사의 보상플랜에 대한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동의해야 한다. 후원자가 등록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러한 자료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회사, 회원 그리고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회사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가 커뮤니케이션상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다. 회원 가입신청서, 회원 커뮤니케이션, 회원 재무적 거래 및 소비자 거래 뿐만 아니라 회사에 제공되는 모든 거래내용은 그 거래에 관련된 개인이나 주체에 의해 직접 제출되어야 한다. 여하의 제출 자료도 제 3자가 대신하여 제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회원이 다른 회원, 신규 회원 신청자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여하의 자료 제출 관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형태의 거래내역 제출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등록절차 중 제출된 서류를 신규 등록자가 직접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29조 승계

회원의 사망 후, 그의 사업은 동 개인의 상속자에게 상속될 수 있다.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법적 문서가 회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회원 자격을 승계할 한 명의 상속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유언 혹은 그 외 동일한 효력이 있는 수단을 준비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사전에 받는 것이 권장된다. 유언 혹은 그 외 동일한 효력이 있는 수단에 의해 회사의 사업이 이전되면, 그 상속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사망한 회원의 마케팅 조직에서 나오는 모든 후원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권리를 얻게 된다. 그 상속자는 반드시: 회원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서의 조건과 조항을 준수하며 사망한 회원의 지위에 대한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회원의 사망 후 양도

유언에 의한 회사 사업의 양도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유언 집행자는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1)사망확인서 (2)공증된 유언장 또는 유언집행자의 선임에 대한 행정문서 (3)승인된 유언집행자가 누구에게 사업과 소득이 양도되어야 하는지 회사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문서 (4)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확인서 회사에 상속신청을 하는 경우 사망시점기준 90일 이내에 상속인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망한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속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회사는 서류심사를 하게 되며 신청접수일로부터 정상적으로 승계시까지 최소 2주이상 소요된다. 회사는 판매원의 지위에 대한 상속인이 정하여질 때까지 판매원의 권리의무를 정지하고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속인은 회원활동 법규(윤리강령)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수당수령의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가 있을 시 변제의 의무도 있다. 상속인은 판매원 지위의 상속을 신청하는 시점에 판매원 등록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 회원이 판매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경우 기존 회원 지위를 탈퇴하고 상속되는 회원번호로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향후 기존 회원의 지위에 따르는 어떠한 수당이나 보너스 등을 요구할 수 없다.

회사는 신청 당시 상속인이 관련 법령 및 회원 관리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속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판매원 지위의 상속인은 단 1명만 허용되며, 법적 상속자가 복수인 경우 나머지 법적 상속자의 동의서 (상속포기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30조 마이오피스(웹사이트의 회원공간)에 대한 접근

회사는 회원을 위하여 온라인 마이오피스를 제공한다. 회원은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회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 회원공지사항, 수당관리 및 제품주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단, 회사는 회원의 규정위반, 회원의 위법행위 방지, 회사의 시스템 보수 등 적절한 사유에 따라 특정 회원의 마이오피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 4 장 : 회원의 책임 】

제 31조 정보 변경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제품 및 지원 자료의 적시 배송을 위하여, 회원은 현재의 자료로 갱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체국 사서함 주소로는 제품의 배달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의 기재가 필요하다. 회원은 필요한 경우 회원의 마이오피스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회사에 제공된 배송주소가 부정확하거나 변경되기 이전의 옛 주소인 경우 해당 배송에 대한 배송비를 회원 및 고객에게 청구한다. 정보를 갱신하지 않아 생기는 회원의 모든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32조 지속적인 자기계발에 대한 의무

1. 후원의 책임

회원은 직급의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하위사업자가 퍼스트코리아 비즈니스를 안정적이고 정확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진정한 지원과 교육, 후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회원은 자신의 하위 사업자 조직에 있는 회원들과 지속적인 접촉 및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항상 스폰서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한 또는 일회성 소식지 전달, 서신교환, 전화통화 및 이메일 등 만으로는 스폰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적극적으로 하위 회원들을 회사의 미팅, 교육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설명하여야 하며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 효율적인 사업기법, 회사의 보상플랜과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등에 대한 동기부여와 교육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하위 사업자 회원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교육하는데 있어 제 13조 1조항(개인자료의 제작 및 사용)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회원은 자신의 하위사업자 조직에 있는 회원들이 제품이나 사업에 대해 부적절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혹은 여하의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 하위 사업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상위 직급자의 교육 및 후원 소홀의 책임이 있으며 상위 사업자가 충분한 교육,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상위 사업자 또는 관련 회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사의 방침에 위배되는 교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회원이 책임을 진다.

2. 교육 책임의 증대

리더십의 다양한 단계를 거쳐 성장해감에 따라, 회원은 제품 판매기법, 제품지식 그리고 회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등에 있어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된다. 경험 많은 회원들은 자신의 조직 내에 경험이 덜한 회원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공유하도록 요청 받게 될 것이다.

3. 지속적인 판매에 대한 책임

자신의 사업적 성취 정도와 상관없이, 회원은 중단 없이 기존고객을 서비스하고 또 새로운 고객

을 창출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교육 프로그램

회원은 각 직급별로 회사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회원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추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3조 비방 금지

회사는 회사의 독립사업자인 회원에게 업계 최상의 제품, 보상플랜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회원의 건설적인 비평과 제언을 받는다. 그러한 모든 제언들은 회원 서비스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회원을 더 잘 서비스하기 위해, 회사는 회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 회사는 건설적인 제언을 환영하지만, 회사, 제품, 혹은 보상플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 및 발언을 회원이 일선 현장에서 하는 것은 회사의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의 하위사업자에 대한 적합한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회원은 회사, 회사의 다른 회원들, 회사의 제품, 마케팅플랜 및 보상플랜 또는 회사의 임직원 들에 대하여 비방, 모욕, 또는 부정적 언급을 해서는 안된다.

【 제 5 장 : 볼륨조건 】

제 34조 제품 판매 및 진술

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 프로그램은 최종소비자에 대한 소매판매에 근간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회원이 최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일반 소비자 대중에게 마케팅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이중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회원이 상업적으로 적절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며, 여하한 경우라도 회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 소비자대중에게 판매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양 혹은 개인이나 가족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양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해서는 안된다. 회사의 주요한 기능이 일반 소비대중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는 회원이 자신 및 가족이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적절한 양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자격요건의 충족 또는 승급의 목적만이 아닌, 개인 혹은 가족의 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까지도 포함하여 적합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소매판매를 규정한다. 이는 선두 직접판매회사들이 준수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소매판매를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회사가 규정한 구체적인 고객 볼륨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회원은 수당의 수령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위한 소매판매 규칙을 지원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회사는 회사가 해당 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무작위 확인 감사 작업을 실행하며, 관련하여 회원을 접촉할 수 있다. 회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를 하여 회사 직원이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사의 제품을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되게 소개하며, 제품에 대한 건강 기능성에 관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제품이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있어 의사의 치료 또는 표준 치료를 대신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이에 상반되는 진술을 할 수 없다. 이는 의학적 효능 및 효과를 주장하거나, 질병에 적합하다며 특정 제품을 처방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사의 제품이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의약품에 비유되어서는 안된다.

제 35조 지역에 대한 제한

누구에게도 지역에 대한 독점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회원의 사업적 지위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며, 가맹비를 낼 필요도 없다.

제 36조 영수증

회원은 제품의 판매 시점에 판매영수증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영수증은 법적으로 규정된 소비자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 보증을 위한 것이다. 회원은 모든 영수증을 2년동안 보관해야 하고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회원의 고객에 의한 중요한 구매에 대한 기록은 회사가 유지 관리하게 된다. 더불어, 회원은 구매자에게 구매 취소에 대한 권리를 구두로 알려야 한다.

별도의 영수증 양식이 없는 경우 판매한 회원의 정보(이름/회원번호/연락처), 구매한 소비자의 정보(이름/연락처), 판매한 제품의 정보(구체적인 제품명, 수량, 가격), 제품인도일, 판매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용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6 장 : 후원수당 】

제 37조 후원수당 수령 자격요건

후원수당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보상플랜상의 자격요건을 달성하고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회원이 계약내용을 준수하는 한, 회사는 마케팅플랜 및 보상플랜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이다.

회사의 고유권한에 의해 프로모션이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오용되거나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회사는 수당의 박탈, 상환, 징계, 계약해지, 또는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하여,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8조 후원수당의 조정

1. 반품된 제품에 대한 조정

회원은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제품 및 서비스에 근거하여 후원수당을 받는다. 환불을 요청하는 제품이 회사에 반품되거나 회사가 다시 환매한 경우, 해당 반품 또는 판매된 제품에 기인하여 발생했던 후원수당은 반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해당월에 적용되며, 그 반품된 제품의 판매에 대해 후원수당을 받았던 상위사업자 회원들로부터 해당 후원수당이 회복될 때까지 매 수당지급 기간에 지속적으로 공제된다.

본인 및 하위 회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 등의 이유로 인하여 당해 본인 회원이 기 지급 받은 후원수당(프로모션 및 제공된 혜택)을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에게 지급될 수당 및 지급될 제 금액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만약 환불 금액에서 공제되지 못했거나 향후 받게 될 후원수당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절차를 시행한다. 미활동 회원, 탈퇴요청 회원,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회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 법률 및 회사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회수한다. 뿐만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후원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공지 및 수당 차감을 진행할 수 있다.

제 39조 보고서

개인 및 그룹 판매 볼륨(혹은 관련된 여하 부분), 그리고 하위사업자 후원 활동을 포함하여 회사가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제공한 하위사업자 활동보고서 관련 모든 자료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디지털 및 기계의 오류에 대한 내재적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주문의 정확성, 완벽성 및 시기 적절성, 신용카드 및 전자 체크 지급에 대한 비승인, 반품된 제품, 신용카드 및 전자 체크의 지불거절 등) 해당 자료를 생성하고 전송한 사람이나 회사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모든 개인 및 그룹 판매 볼륨 정보는 보증 또는 이와 관련한 그 어떤 종류의 표현이나 암시, 또는 묘사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되나 회사는 상기와 동일한 이유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회사는 제공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회사의 온라인 및 전화 보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그리고 그러한 정보에 대한 회원의 신뢰는 회원이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 제 7 장 : 제품 보증, 반품 및 교환】

* 제품 보증 및 반품

기타 관련 서비스는 국내에서 판매하고 구매한 제품에 한한다.

제 40조 제품 보증 및 제품의 반품

1. 소비자에 대한 14일 반품 정책

소비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철회 등을 하고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회사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에 의한 제품의 반품/회원 계약해지로 인한 재고의 환매

회원은 제품 인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면으로 반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이 자신의 회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구매 했던 제품에 대해서 반품이 가능하다. (다른 회원이나 제3자가 구매한 제품의 반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는 회원의 반품 요청에 대해 방문판매법 제17조, 제18조 및 그 시행령 26조에 근거하여 제공된 아래의 지침에 의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회사는 회원의 반품요청에 대해 방문판매법 제17조, 제18조 및 그 시행령 26조에 근거하여 제공된 아래의 지침에 의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반품시점

제품의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제율 0%,

1개월 ~ 2개월 사이 공제율 5%,

2개월 ~ 3개월 사이 공제율 7%,

3개월 이후 반품 허용되지 않음

반품된 제품의 애초구매에 근거하여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었던 모든 후원수당은 당해 회원에게 지급될 수당 및 지급될 환불 금액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또 반품된 원주문에 근거하여 상위회원들에게 지급되었던 모든 후원수당도 해당 상위 사업자의 후원수당에서 공제된다.

3. 제품 품질보증 및 교환

품질보증 및 교환은 회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 41조 반품 절차

① 회사 고객센터(1544-3539)를 통해 반품신청

② 반품신청시 회원정보, 주문번호 통보

③ 반품할 제품과 주문영수증(제품주문서)을 함께 박스 포장하여 착불로 발송

반송처 : (우)17554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105번지, 라인물류

※ 반품물품 입고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처리

④ 반품 기간 경과에 따른 지연배상금 발생 시, 반품 담당자가 별도 연락하여 발생한 금액은 재결제 후 원승인내역은 전체 취소됩니다.

【 제 8 장 : 사업자 자문 위원회 】

제 42조 사업자 자문 위원회

회사는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회원 중 회사에서 선발한다.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에 건의를 하며, 회사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제 9 장 : 회원 금지 행위 】

제 43조 회원 금지 행위

모든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강력히 금지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을 징계규정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하거나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명목을 내세우는 등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교육시키는 행위.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규 가입한 자에게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비용, 기타 금품을 징수하거나 일정 액수의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권유하거나 반품 시 법률상 규정된 공제율을 초과하여 비용을 공제하거나 판매 의무액을 부여하는 행위.
3. 회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또는 폭언, 욕설, 폭행, 허위사실유포, 갈등유발, 선동, 투서 등으로 사업분위기를 해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상품구매 시, 회사의 공식적인 입금계좌 이외의 계좌로의 송금을 유도(권유) 하거나 대금결제수단을 임의로 대체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허위과장광고 (질병, 치료목적, 진단, 의료기기, 의료 유사행위 등 포함) 및 유언비어 유포와 비윤리적인 이성간의 문제로 인해 회사와 회사 소속인 직원 또는 다른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6. 1) 본인이 타활동라인으로 전환, 변경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2) 기 등록된 회원을 자신의 하위 사업자 또는 타라인으로 전환 및 변경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7.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없이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행위.
8. 각종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회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과대·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

- 1) 개인 혹은 공동 운영하는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및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활동에 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2) 회사의 제품이 의약품 및 의료용품으로 오인, 질병의 치료와 같은 유사의료행위 그리고 비교 전후의 효과 등을 표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 등
- 3) 타 업체 또는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광고 행위 등
9. 회원으로 신규 가입한 자에게 회사가 무료로 교부한 일체의 서류(회원등록증, 회원등록신청서, 회원수첩, 마이오피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를 다른 회원이 보관, 인수, 사용하는 행위.
10. 타 회원이 구매한 제품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인수하는 행위.
11. 타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비방,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회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하고 또는 타회사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12. 회원이 동종업계 회사의 활동(본인,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모, 형제 또는 가족의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거나 해당업체의 사업설명, 문자 메시지, 구두로 이전을 권유 또는 유인하는 일체의 행위 및 하위 판매원의 반품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하는 행위.
13. 회원은 후원인으로서 역할과 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플랜상에 명시된 후원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14. 본인과 하위판매원이 허위매출(후원수당 수령 후 의도적 반품행위) 또는 대량반품 등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방관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
15. 회사가 허락치 않은 단체를 개설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하에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요구를 하거나 근거 없는 협박(온라인, 오프라인, 문자 등)을 하는 행위.
16. 불법적인 사업형태로 인해 대외기관에 민원을 야기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7. 신규회원의 제품을 사용방법 설명, 전달식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 개봉, 훼손하는 행위.
18. 회원은 회사사업과 관련하여 독점적 영업지역을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 상표권을 사용한 간판 등을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모든 회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는 소개나 암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 대표 등의 표현을 구두로 하거나 명함이든 인쇄물 등에 사용할 수 없다.
19. 회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교 또는 정치단체, 타 사업, 직장 등을 소개하거나 알선하여 참여를 강요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

【 제 10 장 : 회원 징계 규정 】

제 44조 목적

이 규정은 회원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 법) 및 회원 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5조 징계위원회 설치

회사는 방판 법/회원 관리 규정 위반자에 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제 46조 징계위원회 구성

1. 징계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2. 방판 법 회원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사는 준법부서에서 진상을 파악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3. 징계위원회 구성원 (최소 2인 이상)

위원장 : 대표이사 임명자

위 원 : 영업, 고객지원 과장급이상 중 1명 이상

간 사 : 준법 담당자 중 1명

4. 징계위원회 회의

징계위원회 회의는 준법부서에서 안건 회부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준법부서에서는 해당 회원의 방판법/회원 관리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징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47조 징계사유

회원이 방판법/회원 관리 규정을 위반 시, 위반 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피해 여부, 피해회복 여부,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제48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8조 징계의 종류

- ① 직권 해지
- ② 자격 정지(후원수당 정지)
- ③ 자격 제한
- ④ 경고
- ⑤ 기타 필요한 조치

제 49조 진상조사 및 제재절차

1. 회사는 회원의 사업 진행에 있어 관련 법규의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거나 회원의 위반 행위를 접수 받으면 해당 회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2. 회사는 규정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소명자료를 재차 요구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회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해야 하고 주어진 시일 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을 제출할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 자격에 대하여 규정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반 행위를 한 회원에게 회사의 결정사항을 서면(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5. 규정을 위반한 회원이 회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신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회사 준법부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 신청에 대해 회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의 할 수 있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회사는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6. 회원의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한 심각한 위반사항이 우려되는 사안의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검토기간 동안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회사는 규정위반에 대한 최종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필요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회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8. 방판법/회원 관리 규정을 위반한 회원을 발견한 회원은 방판법과 회원 관리 규정을 알려주고 그 문제를 상의하여 해결토록 하며, 위반된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준법부서에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0조 징계조치 및 효력

1. 직권해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 1) 방판법/회원 관리 규정 중 1회 위반으로 인해 회원자격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별도의 명기된 사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으로 당사 또는 다른 회원에게 심각한 피해를(직권해지 조치에 준하는)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회원이 방판법 및 회원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그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요청한 기간내에 정정하지 않거나,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 3)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의 사유로 당사 또는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4) 당사 또는 회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 5)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이 방판법/회원 관리 규정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6)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회원의 비 활동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의 효력은 종료될 수 있다.
- 7) 회원 등록 후 구매이력이 없는 경우

1-1. 직권해지의 효력

- 1) 해지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 2) 회사가 회원의 자격을 해지한 경우, 회원의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탈퇴한 경우 및 미 갹신 탈퇴 또는 승계자 없이 사망한 경우 등의 해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는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

2. 자격 정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1) 방판법/회원 관리 규정 중 1회 위반으로 인해 자격정지 할 수 있다는 별도의 명기된 사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으로 당사 또는 다른 회원에게 상당한 피해를(자격정지 조치에 준하는)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증빙된 사실과 함께 확인된 위반행위나 회원 관리 규정 위반자는 회사에 의해 언제든지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2 -1. 자격 정지 효력

- 1) 자격이 정지된 회원에 대하여는 정지 기간 동안 보상플랜에 준하여 발생하는 모든 후원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 2) 회사는 자격이 정지된 회원에게 보상플랜에 따른 자격인정을 보류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 3)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회사의 어떠한 공식행사에도 초대되지 않으며 회사는 참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 4)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 회사 제품을 소개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원으로서의 어떠한 사업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 5)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포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어떠한 회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2-2. 자격정지 기간의 종료

1) 자격 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회원이 앞으로 더 이상 회사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본 회원 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자격 정지 조치를 풀고 제반 규정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회복시킨다.

2) 자격 정지 기간 중 해당 회원이 재차 본 회원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 기간 종료 이후에도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3. 자격제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방판법/회원 관리 규정 중 1회 위반으로 인해 자격제한 할 수 있다는 별도의 명기된 사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제49조 6항 규정에 의해 시정 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한 심각한 위반사항이 우려되는 사안의 경우

3) 증빙된 사실과 함께 보고된 위반행위나 회원 관리 규정 위반자의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어 자격제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회사는 언제든지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회원자격제한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될 수 있다.

제품구매권 정지

후원수당지급 정지

프로모션혜택 정지

회사행사 참가금지

진행중인 자격요건 취득의 정지

마ियो피스 이용 금지

3-1. 자격 제한 기간의 종료

1) 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회원이 앞으로 더 이상 회사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본 회원 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자격 제한 조치를 풀고 제반 규정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회복시킨다.

2) 자격 제한 기간 중 해당 회원이 재차 본 회원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 기간 종료 이후에도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다시 자격자격을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경고

- 1) 방판법/회원 관리 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회원에게 경고조치 할 수 있다.
- 2) 경고조치를 받았을 경우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 등의 행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 3) 경고조치로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이외 추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조치

- 1) 회사는 제48조에 명시한 적절한 제재이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 2) 본 징계규정과 관련된 회원의 위반행위, 의무 불이행 또는 과실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동일한 위반행위, 의무 불이행 또는 과실을 용납하거나 동일하게 취급할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 3) 본 징계규정은 한국 내에서 시행중인 실정법에 따라 집행되고 해석된다.
- 4) 징계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요구를 하거나 근거 없는 협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는 징계규정과 별도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51조 징계의결 기간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징계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2조 징계의결

1. 징계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행위 사실, 회원활동, 공적,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한다.

제 53조 의결보고 및 집행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의결한 후에는 준법부서에서 징계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위원장/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를 징계 처분한 때에는 준법부서에서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결정문 또는 경고장을 본인에게 서면(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한다.
3. 징계 처분된 결과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 회원공간(마이오피스) 통해 공고할 수 있다.
4. 징계대상자의 방판법 또는 활동법규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보전을 위하여 그 손해 상당액을 징계대상자에게 청구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수당 등에서 공제할 수 있

다.

【 제 11 장 : 세금 】

제 54조 세금

각 회원은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당 소득 또는 그 외 소득에 부과되는 중앙 및 지방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회사는 세법에 규정된 바에 의거하여 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제 12 장 : 비활동, 상태변경 및 계약해지 】

제 55조 계약해지의 효과

각 회원은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후원수당 소득 또는 그 외 소득에 부과되는 중앙 및 지방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회사는 세법에 규정된 바에 의거하여 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사업계약이 해지된 회원은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 및 그 회원의 전(前) 하위사업자 영업조직의 매출과 다른 활동에서 창출된 장래의 후원수당 또는 그 외 소득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계약해지가 된 경우, 회원은 자신의 전(前) 하위사업자 조직 그리고 자신의 전(前) 하위사업자 조직의 매출 및 그 외 활동에서 기인한 여하의 후원수당 또는 그 외의 소득에 대한 재산을 포기하는데 동의한다.

자신의 회원 계약이 해지된 후, 전(前) 회원은 회사의 회원으로 행세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도 없다. 회원 계약이 해지된 회원은 계약해지 전까지 발생한 후원수당을 회사로부터 정산 받으며, 이 후 회사와의 계약은 종료되므로 추가로 수령할 후원수당 등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이 해지된 회원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 56조 비자발적 계약해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여하한 계약 조건을 회원이 위반하는 경우, 자신의 회원 계약에 대한 비자발적 해지를 포함하여, 제 10 장에 열거된 여하의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 회사는 회사가 (1)사업을 중단하거나 (2)회사 법인을 해체하거나 (3)직접판매방식을 통한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는 경우, 30일의 사전 고지를 통해 모든 회원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 57조 자발적 계약해지 및 회사의 직권에 의한 계약해지

회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한은 소멸된다. 계약해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회

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서면통지에는 해당 회원의 서명, 이름, 주소, 회사 회원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 13 장 : 인터넷 비즈니스 규정 】

(주)퍼스트코리아는 회사의 상호, 로고, 제품 이미지, 브랜드, 영업 및 마케팅 정보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웹사이트) 이외에 회원은 회사 사업 및 제품과 관련하여 금전적 비용이 들어가는 특정 도메인을 획득하여 호스팅을 통한 인터넷 홈페이지(웹사이트) 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신, 누구나 비용 없이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한 온라인상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개인적인 인스턴트 메시지, 메시지(SMS, MMS, 카카오톡, 왓츠앱, 위챗 등)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서비스 일체를 사용하여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 및 전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8조 온라인, SNS 채널 구축 및 운영

1. 회원이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SNS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반드시 회사에 "회원 온라인 등록신청서" 를 담당부서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원의 온라인, SNS채널은 소속 회원 간의 사업 및 상호 의사소통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을 통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오픈마켓에 회사의 상호, 회사의 제품 및 판매보조물등 어떠한 형태로도 판매해서는 안된다. 회사는 상기 금지된 영업행위로 인해 회원이 과대광고나 허위사실 등이 불특정다수에게 쉽게 노출시킬 수 있으며 반품 등 방문판매법규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3. 회원의 온라인 및 SNS 채널에서 회원가입 접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회원 온라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회원은 온라인, SNS 채널 등에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가 규정하는 범주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5. 회원의 온라인, SNS채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 ○○○은 (주)퍼스트코리아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 사업자 ○○○입니다."
6.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명칭, 이메일 주소 및 사용자명, 상품명, 창업자의 이름 등은 해당 온라인, SNS등의 제목,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 퍼스트코리아, 퍼스트, 주식회사 퍼스트, (주)퍼스트, (주)퍼스트코리아, FK, First Korea 등)
7. 온라인, SNS 채널 접속 및 사용에 대하여 일체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8. 회원은 온라인, SNS채널 운영 시 회사보다 우선하여 검색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59조 온라인 및 SNS 관리

1.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회원 온라인 등록신청서"에 작성, 제출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SNS채널의 아이디, 주소가 변경될 시에는 회사에 반드시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회원은 회원탈퇴 시 또는 회원자격이 박탈될 때에는 반드시 온라인, SNS채널도 폐쇄하여야 한다.

3. 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 SNS 등에 하이퍼링크가 가능하다.

4. 회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고지한 내용중 회사가 변경사항을 고지하면 공지 이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웹사이트에서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절차를 지연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60조 온라인 및 SNS 관련 준수사항

1. 사업 및 제품에 대해 회사의 공식적인 자료 이외에 실제와 다르게 소개해서는 안된다.

2. 회사 마케팅 플랜 및 보상플랜, 수입, 사업기회, 제품 등을 설명할 경우 회사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회사 이외의 다른 사업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판매 또는 홍보할 수 없다.

4. 소비자 및 다른 회원 등 개인신상 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철저한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모두에게 "개인정보보호정책" 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5.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마켓, 온라인 경매 사이트, 온라인 중고장터,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커머스 등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 운영사이트, 또는 사업용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사 제품 및 판매보조물품을 광고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6.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전자우편, 쪽지, 메시지 등을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제품 또는 사업기회를 홍보해서는 안 된다.

7. 웹사이트에 자신의 회원번호나 비밀번호 등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8. 웹사이트에서 회사의 제품과 사업기회 등을 광고함에 있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회원활동 규정, 화장품법, 상표법 등 대한민국 관련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9.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광고를 할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혼동되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치료나 의학적 효능의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10. 당사의 제품가격(회원가)을 허위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11. 온라인상에 회사의 영업, 마케팅, 보상플랜을 소개함에 있어 적법하고 정당한 노동 없이 누구

나 손쉽게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형태의 불로소득을 부추키는 용어, 문구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12. 기타 지극히 객관적, 상식적인 대중의 범주에서 벗어나 회사의 품격,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 있는 저급한 단어, 부적절한 용어, 문구의 사용 및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13. 회사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거짓사실, 부정적인 소문 등을 온라인에 게시, 유포해서는 안된다.

14. 회사의 온라인 담당부서에서 회원의 온라인, SNS상에 게시된 콘텐츠가 기타 회사의 영업방침에 위배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회원에게 이를 시정, 삭제를 요구, 요청할 시 회원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5. 본 규정을 위반할 시 회사는 징계처리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제 14 장 : 상표, 상품명 및 저작권 】

제 61조 소유권 및 사용제한

1. 회원은 회사 사업 및 제품과 관련하여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 제품명, 기장, 로고(약호), 디자인 및 기타 재산권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회원은 회사가 사용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및 회사의 관계사가 사용하는 상표, 로고 및 기타 지식 재산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회사가 발행 및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무단으로 전제하거나 발췌할 수 없다.

3. 어느 누구도 사전승인 없이는 회사 회사명, 로고 또는 제품명이나 상표가 표기된 품목을 회사 이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생산하거나 조달해서는 안된다. (판매보조물품 및 각종 홍보물 등)

4. 회원은 회사라는 표현을 사업체 또는 사업명의 일부로라도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가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허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일정 지역에 대한 독점권 등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5.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회원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회사명칭이나 로고를 부착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 또는 회사 소유의 제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부 등에 등록할 수 없다. 회사가 허가하지 않은 곳의 전면, 기타 행인이 볼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 또는 회원 희망자를 유인하여서는 안된다.

6. 회원은 상점, 학교, 행사장, 시장, 미용실, 차량 및 기타 영업시설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모든 시설) 등에서 회사의 제품이 판매되거나 전시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여 회사의 사업이나 제품 및 판매보조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없다. 또한 회사가 인정한 시설(사전

승인을 받은)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서비스(예: 마사지 등)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7. 회사는 허락하지 않은 상표, 로고, 기타 지식 재산권 및 서비스 등을 사용한 회원에게 회원징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회원은 즉시 응해야 하며 회사가 입은 손실, 손해 및 기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2조 사용허가

1. 회원은 회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회사가 인정하고 공급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 로고 및 기타 이미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급한다.

2. 회원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제작하는 홍보물에 회사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사용하고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회사의 허가로 복제되었음]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단 부분 발췌 및 임의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회원은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가 회사 상표의 소유권자임을 언제나 표기한다.

상표는 등록된 대로만 사용하며 상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하여 회사가 수시로 발행하는 규칙 및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제 63조 판매보조물품

회원은 회사가 서면 승인하지 않은 일체의 판매보조물품을 제작, 사용 및 판매할 수 없다. 서면 승인은 회사가 승인서에 명시한 날짜까지 유효하며, 그 이전이라도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 까지만 유효하다.

회원은 책자, 인쇄물,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CD, DVD, 메모리스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상품 보조용품,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전자 매체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판매보조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제작한 판매보조물품의 홍보 또는 유통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회원은 회사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모임에서 행한 연설 또는 설명회 내용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 또는 촬영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녹음 또는 녹화된 자료를 판매하거나 승인 받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여 본인의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참석과 동시에 이에 동의하며 이로 인한 초상권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다.

회원이 제작한 책자, 테이프 또는 기타 판매보조물품이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회사 사업을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그와 같은 판매보조물품의 제작,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

라고 지시할 권리가 있다. 해당 회원은 회사의 중지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하며, 그와 같은 자료의 제작, 유통 및 판매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실, 손해 및 기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15 장 : 부칙 】

제 64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2023년 12월부터 적용 시행한다.

FIRST